

韓國建築設計競技運用委員會規定 및 內規

第1条 (目的) 本規定은 建築設計競技 規準을 施行함에 있어 委員會의 業務, 責任, 權利를 規定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第1部 委員會 規定

第2条 (位置) 韓國 設計競技運用委員會는 서울 特別市 鍾路區 世宗路 81~6 番地에 둔다.

(以下 本委員會라 칭한다.)

第3条 (構成) 本委員會는 大韓建築學會, 韓國建築家協會, 大韓建築士協會에서 若干名씩 選出된 人士로 構成하며 互選에 依하여 1名의 委員長을 둔다.

第4条 (任期) 本委員會의 任員 및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나 重任할 수 있다.

第5条 (會議) ①定期會議은 月 1회를 원칙으로 하며 必要時에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

②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本 內規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第6条 (財政) 本委員會의 財政은 三協団体会에서 釀出金과 其他의 贊助金으로 한다.

第7条 (權利) 本委員會는 다음의 權利를 갖는다.

① 建築家 個人에게 被害가 없는 한 本委員會가 設計競技에 回附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時는 建築主에게 回附를 要請할 수 있다.

② 建築主가, 規準에 違背되는 行爲를 할 時에 建築主에게 시정을 要請할 수 있으며 이에 不応할 時에는 그 內容을 公開하여 応募 參加를 不응케 할 수도 있다.

③全応募者의 応募不응을 三団体会에 要請하여 議決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応募할 時는 그 応募

者를 該當協會에 懲戒를 要請할 수 있다.

第8条 (義務) 本委員會에는 다음과 같은 義務가 있다.

① 本委員會는 建築主로부터 技術顧問, 審査委員의 推薦을 받으면 추천을 할 수 있다.

② 本委員會는 応募者나 建築主의 一切의 質問에 応할 義務가 있으며 答辯內容을 全応募者에게 公知시킬 義務가 있다.

第2部 委員會 內規

第9条 (公告) ① 設計競技의 公告는 廣範圍하게 하여 많은 応募者가 認知토록 하여야 한다.

② 設計競技 公告時에는 事理에 맞는 (規準에 의거) 懸賞金을 明示하여야 한다.

③ 設計競技 公告時에는 事理에 맞는 充分한 作品 제작기간을 設定 明示하여야 한다.

④ 設計競技 公告時 著作權의 侵害나 著作者人格에 損傷되는 用語를 掲載할 수 없다.

⑤ 事理에 맞지 않는 參加制限은 公告할 수 없다.

第10条 (賞金) ① 規準 第8條에 依하여 支払되는 賞金은 當選作 發表后 1個月 以內에 支払하여야 한다.

② 公告時에 策定된 金額은 如何한 경우가 있더라도 減小될 수는 없다.

第11条 (建築主) ① 建築主는 応募要領書를 作成 応募者에게 配付하여야 한다.

② 建築主는 公告文이나 施行要領書中 建築設計競技 運用委員會로 부터 不當性을 指摘받고 修正 要請이 있을 時에는 이에 應해야 한다.

③ 建築主는 當選者의 同意없이 當選案에 部分的인 變造案을 作成 制作케 할 수 없다.

④ 當選案이 建築主 事情에 依해 建築이 실시 안될 시라도 當選案을 다른 用途의 建築에 使用할 수는 없다.

第12条 (審査委員会)

- ① 規準 第11条의 審査委員會는 建築主의 要請期間만 存立한다.
- ② 建築主는 敝正한 審査를 위한 審査委員會의 如何한 要請에도 應해야 한다.

第13条 (技術顧問) ① 建築主로부터 委嘱받은 技術顧問 및 技術職担当役은 設計競技規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技術顧問 및 技術職担当役은 審査委員을 檢임할 수 없다.

第14条 (審査委員) 審査委員會 構成發表는 公告와 同時에 하거나 審査以前에 하여야 한다.

第15条 (落選作返還) 一切의 落選作은 2週日 以内に 返還하여야 하며 破損時는 補償을 하여야 한다.

附 則

- 1. 本 規定에 결여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결 과로 결정한다.

公 告

會員諸位

設計圖書에 한글專用

우리에게는 優秀한 文字(한글)가 있을 뿐 아니라 建築에 關係되는 用語가 制定되어 있어, 使用하기에 不便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設計圖書에 外來語를 標記하는 例가 있어 工事場에서 直接 工事に 임하는 技能工들이 이를 解得하지 못함으로서 工事が 지연되거나 또는 뜻하지 않은 차질이 초래되는 事例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本會 第26回('72. 12. 6) 理事會에서 論議한 결과 우리民族의 主体意識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建築文化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決議 하었으니 諸般業務에 實効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앞으로의 모든 設計圖書는 한글로 標記할 것.
- 나) 外來語를 標記할 必要가 있을 때는 우선 한글로 標記하고 그 上下 左右便에 外來語를 標記하고 괄호로 묶는다.
- 다) 1973年 1月 1일부터 1973年 3月 31日까지를 권장기간으로 하고, 당해기간중에 登錄하는 圖書中 外來語로 標記한 圖書에 對하여는 차후부터는 한글로 사용토록 권장한다.
- 라) 1973年 4月 1日 부터는 設計圖書의 登錄時 한글로 標記된 圖書에 限하여 登錄한다.

※) 아울러 현재 出刊되어있는 建築關係 用語集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韓國建築用語集	張 起 仁	韓國建築家協會	—
最新標準建設用語事典	—	大韓建設協會	1,500 원
建築用語辭典	金 平 卓	漢進文化社	1,200 원
現代建築事典	張 聖 俊 訳	民 音 社	7,000 원
書 籍 名	著 者	發 行 處	定 価